

1. 고용유지지원금

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일부를 사업주에게 지원하여 경영부담 완화

○ 지원대상(지원요건)

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

- 기준달(고용유지조치 직전달)의 매출액이 그 이전 6개월 평균 매출액보다 15%이상 감소
- 또는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

② 고용유지조치계획의 신고

- (계획서 제출) 역월에 따른 1개월 단위로 계획신고서를 실시일 전일까지 접수
- (근로자대표와의 협의)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 협의

③ 고용유지조치의 실시

- (휴업) 기업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,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1개월의 단위기간동안 총근로시간 대비 근로시간을 20% 초과 단축
- (휴직)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연속하여 1개월 이상 근로제공을 면제

④ 계속고용 의무 준수

-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까지 전체 피보험자에 대해 고용조정(감원, 권고사직 등) 금지

※ 참고(지원제외)

- ▶ 고용보험 취득기간이 90일 이하인 자, 일용근로자, 고용조정이 예고된 자,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·비속인 자는 지원 제외
- ▶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 채용자가 있는 경우 해당월 전체 부지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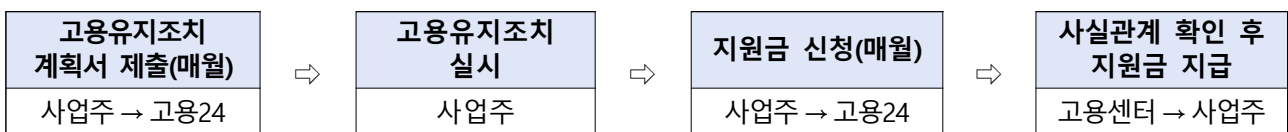
○ 지원내용

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휴업·휴직수당의 8/10(대기업 6/10) 지원(1일 한도 6.6만원)

<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(일반)>

- ▶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·휴직수당의 2/3(대기업 1/2) 지원(1일 한도 6.6만원)

○ 지원절차



○ 문의처

- 국번없이 ☎ 1350
- 광주광산고용복지+센터 ☎ 062-960-3201, 3203

2.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

사업주가 근로자, 채용예정자, 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등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인적자원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

○ 지원대상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자체 또는 위탁으로 소속 재직자(퇴직예정자 포함)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*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사업주
 - * 4시간 이상(집체, 인터넷원격) 또는 2개월 32시간 이상(우편원격) 훈련
- 「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고시」 지정 기간 중 시작하는 훈련 과정에 한해 적용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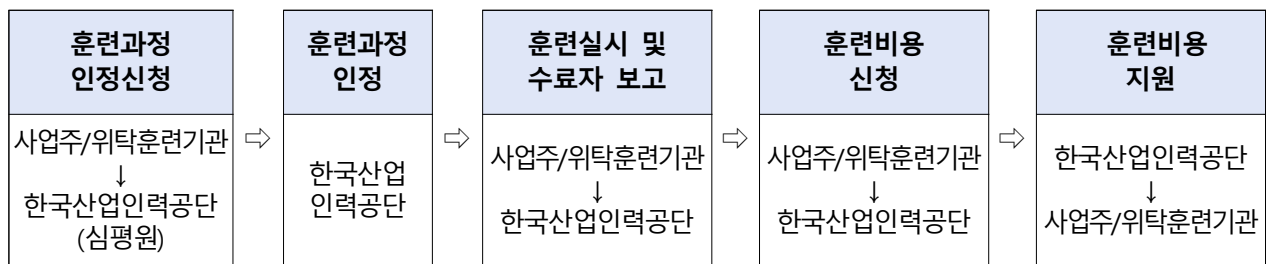
○ 지원내용

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지원수준 상향

사업주 규모	지원율
우선지원 대상기업	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」 제27조에 따른 지원 단가의 130%
1,000인 미만 기업	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」 제27조에 따른 지원 단가의 80%
1,000인 이상 기업	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」 제27조에 따른 지원 단가의 70%

○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

-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온라인(HRD-Net), 오프라인(방문, 우편, 팩스 등)으로 훈련 신청
- 훈련비용 지원신청서와 훈련비용 증빙서류(훈련비 계산서 등)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훈련비용지원2부로 제출



※ 과정인정, 실시신고, 변경신고, 수료보고 등 훈련 운영 관련 승인 ▶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
훈련비용 지급 ▶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훈련비용지원2부

○ 문의처

- 한국산업인력공단 콜센터 ☎ 1644-8000
-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: 062-970-1732
-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: 02-2137-0592~7

3. 국민취업지원제도

취업을 희망하는 저소득구직자, 자립준비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, 소득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

○ 지원대상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내 취업지원 신청자 중 광산구 소재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'25. 5. 28. 이후 이직한 이력이 있고 현재 실업상태인 자(타지역 거주자 포함)

※ 취업지원 신청 시 취업취약계층(고용위기지역 등 지정에 따른 실직자)임을 체크

○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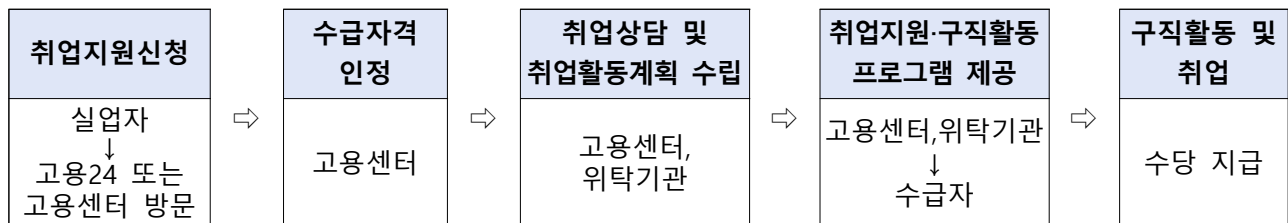
구분	유형	세부 지원내용
취업지원	공통	○ (취업활동계획) 심층상담을 통해 개인별 역량·의지별 수립 ○ (취업지원서비스)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·일경험·복지 프로그램 등* 제공 * (취업지원)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프로그램(생계, 의료, 금융, 돌봄서비스 등) 연계 (구직활동지원) 동행면접, 이력서·면접 컨설팅, 일자리정보 제공, 채용박람회, 취업알선 등
	I 유형	○ (구직촉진수당)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시 월 50~90만원*, 6개월 지원 * 기본 50만원 및 부양가족(만 18세 이하, 70세 이상, 중증장애인) 1인당 10만원씩 추가
소득지원	II 유형	○ (취업활동계획수립 참여수당) 취업활동계획 수립시 15~25만원(1회) 지원 ○ (훈련참여지원수당) 직업훈련 참여 및 80% 이상 출석시 월 28.4만원(6개월) 지원 ○ (참여장려수당) 고용센터 방문하여 집중취업상담·알선참여시 1회 2만원(3회) 지원
	공통	○ (취업성공수당) 6개월 근속시 50만원, 12개월 근속시 100만원 지원* * I·II유형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, 특정계층(소득무관)

<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특정계층으로 참여>

- ▶ 특정계층 : 15~69세, 소득 및 재산 무관

★ **중장년(35~69세)의 경우 중위소득 100% 이하만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에 참여 가능하나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경우 소득수준과 무관, 특정계층으로 참여 가능**

○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



○ 문의처

- 국번없이 ☎ 1350
- 광주고용복지+센터 ☎ 062-609-8793, 8795, 8796
- 광주광산고용복지+센터 ☎ 062-960-3232, 3225

4. 국민내일배움카드

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

○ 지원대상

- (재직자)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장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 또는 해당 지역에 주소(카드 수령지)를 두고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
- (실업자) ①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실업자(신청시점 기준 3개월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), ②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한 자('25.5.28.~'26.2.27.)
- (자영업자)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서 신청시점 기준 1년 이상(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 연월일 기준) 사업하고 있는 자영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
 - *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사업자로서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(수입금액)이 4억원 미만인 경우
 - *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취업하기를 희망하거나 업종을 전환하여 창업하기를 희망하는 경우

○ 지원내용

- 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일반 대상자에게도 우대지원대상과 동일한 혜택 부여
→ 본인부담률 0~20%로 인하, 계좌 한도추가 200만원

<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(일반)>

- ▶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등에게 월 11.6~31.6만 원 지급(단위기간 1개월 출석률 80% 이상 시)
 - *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미지급
- ▶ 지원금액 : 5년간 최대 300만원, 본인 부담률 15~55%
- ▶ 우대지원대상(저소득층 및 특정 대상) : 본인 부담률 0~ 20% , 계좌 한도추가 200만원

○ 이용방법

- (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)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(www.work24.go.kr) 신청 가능
 - *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: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(신청 후 센터담당자 유선상담 실시)
 - * 140시간 미만 훈련과정: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(필요시 진단·상담 진행)

○ 참고사항

- 국민내일배움카드 계좌한도 추가지원은 **추가지원 신청일 기준**으로, 훈련비 지원 비율은 **훈련과정 시작일 기준**으로 지정기간 내인 경우 적용
- 훈련과정은 고용24(www.work24.go.kr) 검색

○ 문의처

- 국번없이 ☎ 1350
- 광주고용복지+센터 ☎ 062-609-8721~6
- 광주광산고용복지+센터 ☎ 062-960-3236, 3237

5.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

실업자 및 비정규직 등의 장기간 직업훈련에 따른 생계부담을 대부지원

○ 지원대상

- 가구별 연간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80%* 이하이고,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자 중 대부 대상월의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인 자로
 - ①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, 실업자(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는 자), 무급휴직자,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소득요건 만족하는 자
 - ②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서 근로하다,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일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날 이후 이직하여 실업상태인 사람(타지역 거주자 포함)
- * 국가기간·전략산업직종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, 중장년내일센터 프로그램 참여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%이하로 적용
- **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제외

○ 지원내용

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대부한도 1인당 월 최대 200만원(총 대부한도 2,000만원)으로 확대

<직업훈련 생계비 대부(일반)>

- ▶ 대부한도 : 1명당 월 2백만원, 총 1천만원 한도
- ▶ 이율: 연리 1%(신용보증료 별도)
- ▶ 상환조건: 최대 3년 거치,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
- *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,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,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가능

○ 신청방법 및 절차



○ 문의처

-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☎ 1588-0075
-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☎ 062-608-0375
-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 ☎ 062-608-0411

6.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용자

저소득 근로자의 혼례·장례·양육 등 필요한 생활자금을 저리로 용자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

○ 지원대상

-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의 재직 근로자로서 아래 2가지 요건 모두 충족
 - ① 3개월 이상 근속 중이면서
 - ② 3인 가구 월 평균 중위소득의 1/2 이하(25년 252만 원)인 자
 ※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최대 180일 이내 45일 이상 고용보험 이력이 있어야 하며, 소득요건은 미적용

○ 지원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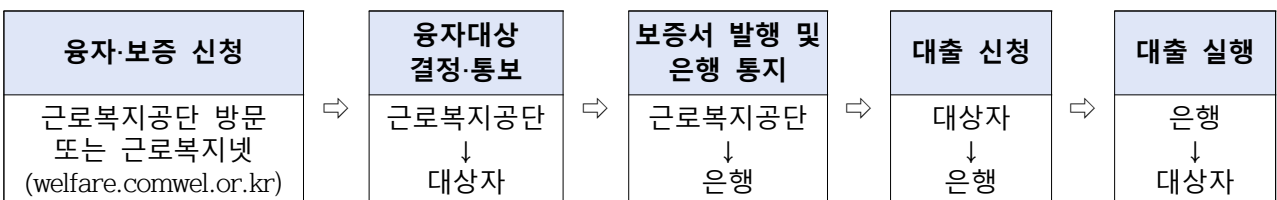
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2종류 이상 용자 신청시 최대 2,500만원 한도

구분	의료비, 장례비	혼례비	노부모부양비	자녀양육비	소액생계비	합산 용자한도
용자 한도	1,000만원	1,250만원	2,000만원 *(조)부모 1인당 500만원	2,000만원 *7세 미만 자녀 1인당 500만원	200만원	최대 2,000만원 *선제대응2,500만원

○ 용자 조건

- (금리 및 상환) 연1.5%,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
- (신용보증) 용자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공단이 신용보증지원(신용보증료 연 0.9% 별도 부담)

○ 신청방법 및 절차



○ 신청제한

- 이미 용자한도액까지 용자를 받은 사람,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아 용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, 공단의 신용 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및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,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, 대위변제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,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이 50만원 미만인 사람,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였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, 마약·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에 중독된 사람, 장례비의 경우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람, 외국인 및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함)는 지원제외

○ 문의처

-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☎ 1588-0075
-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☎ 062-608-0110, 0305, 0386
-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 ☎ 062-608-0416

7. 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

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용자하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

○ 지원대상

- (사업장 소재지)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장의 임금체불 근로자(거주지 무관)
 - * 폐업된 경우는 제외
 - *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30일 이상 고용보험 이력이 있어야 함
- (체불요건)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 체불
 - * 건설일용근로자는 전년도 건설업임금실태조사(개별직종노임단가) 중 하반기 보통인부 노임 단가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('25년 835,405원) 이상 체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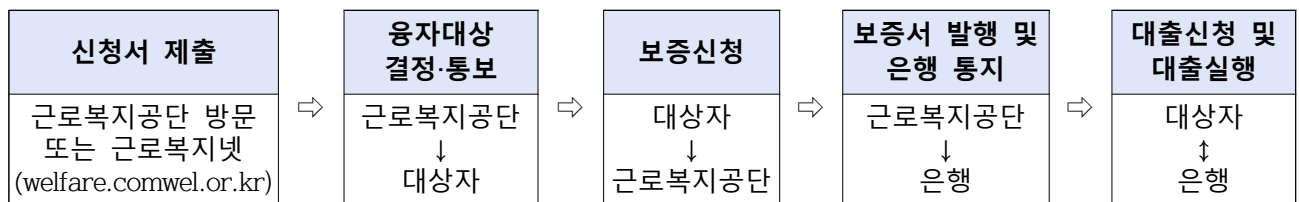
○ 지원내용

★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은 용자한도 최대 1,500만원으로 확대

<체불 근로자 생계비 용자(일반)>

- ▶ (재직자) 체불임금 범위 내 신청
- ▶ (퇴직자) 최종 3개월간 임금(휴업수당, 출산전후휴가급여 등),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등 체불임금
- ▶ (용자한도) 최대 1,000만원
- ▶ (이자율) 연 1.5% (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에 따른 신용보증료 1% 별도)

○ 신청방법 및 절차



○ 신청제한

- 이미 용자한도액까지 용자를 받은 사람
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아 용자금이 회수 결정된 사람, 공단의 신용 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,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
-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, 대위변제, 부도, 금융질서문란 등의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
- 외국인 및 재외동포(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를 말함)

○ 문의처

-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☎ 1588-0075
- 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☎ 062-608-0372
- 근로복지공단 광산지사 ☎ 062-608-0415